

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김인호
(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)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!
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 김인호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「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-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며, 금고의 선정과정은 일반경쟁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-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금고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입금 수납 처리과정의 업무차질을 예방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간 금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시금고에서 자치구 세입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
- 주요 내용은 금고의 약정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, 자치구가 자치구 세입금에 대한 수납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금고가 해당 자치구 세입금 수납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